

[서식 예] 답변서(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변제기 도래 항변)

답 변 서

사 건 2000가단0000 대여금

원 고 000

피 고 ◇◇◇

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.

청구취지에 대한 답변

- 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2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구원인에 대한 답변

- 1. 원고는 소외 □□□가 소외 ▲▲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, 위 보증계약상 소외 □□□에 대한 구상권이 있음을 이유로 위 □□□을 대위하여 위 □□□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습니다.
- 2.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위해서는 피보전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(민법 제404조 제2항 참조)
- 3. 그런데 소외 □□□가 소외 ▲▲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금전소비대차계 약에 의하면 변제기가 아직 2년이나 남아 있는 상태이고, 그 외에 원고가 위금전소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소외 □□□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도 없어 아직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.



사전에 채권자대위권행사를 위한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할 것입 니다.[갑제1.2호증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보증계약서 참조]

4. 따라서 원고는 소외 □□□을 대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입 증 방 법

1. 을제1호증

금전소비대차계약서

1. 을제2호증

보증계약서

2000. 0. 0.

위 피고 🛇 🛇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제○○민사단독 귀중



제출법원	본안소송 계속법원
제출부수	답변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
, , , ,	·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날부
	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함. 다만,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
	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(민사소송
	법 제256조 제1항). 법원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
답변서의	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
제 출	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음. 다만,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
	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
	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(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).
	·상고심에서 피상고인은 상고인의 상고이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0일 이
	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(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).
의 의	답변서는 피고나 피상소인이 본안의 신청에 대한 답변하려는 사항을 기재하여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말함(민사소송법 제148조, 제428조, 제430조).
	답변서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하는데,
기 타	• 청구취지 :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작성
	·청구원인 : 원고의 청구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인정할 부분과 부인할 부분을
	구분, 부인할 부분에 대하여 이유를 밝히고, 인정할 부분에 대하여도 항변사유
	가 있으면 항변과 동시에 이유를 밝혀야 함.
	·당사자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변론기일에 출석하
	지 아니하고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마저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사
	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
	있으므로, 그 결과 의제자백(자백간주) 된 피고들과 원고의 주장을 다툰 피고들
	사이에서 동일한 실체관계에 대하여 서로 배치되는 내용의 판단이 내려진다고
	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(대법원 1997. 2. 28. 선고 96다53789 판
	결).
	·응소관할(변론관할)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
	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
	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(대법원 1980. 9. 26.자 80마403 결
	정).
	·원고의 청구원인사실에 대한 주장을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의 답변서가 진술되
	거나 진술 간주된 바 없으나 동 답변서가 제출된 점으로 미루어 변론의 전취지
	(변론 전체의 취지)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툰 것으로 볼 것임(대법원 1981.
	7. 7. 선고 80다1424 판결).
	·보증인의 보증의사의 존부는 당사자가 거래에 관여하게 된 동기와 경위, 그 관
	여 형식 및 내용, 당사자가 그 거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, 거래의 관
	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사해석 및 사실인정의
	문제이지만, 보증은 이를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루어지는 것이므
	로 보증의사의 존재는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함(대법원 2000. 5.
	30. 선고 2000다2566 판결).
	00. E4 2000-12000 E E/.